

## 국채사무취급절차

제정	1987. 12. 7.	이 사결재	국증1011-752
개정	1989. 3. 15.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228
	1990. 2. 12.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 89
	1991. 9. 5.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690
	1992. 10. 17.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695
	1994. 2. 22.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 99
	1994. 4. 25.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315
	1996. 8. 22.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669
	1996. 9. 25.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738
	1996. 10. 30.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794
	1997. 5. 29.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463
	1997. 12. 19.	국고부장결재	국증8011-937
	1998. 12. 18.	금융결제부장결재	금증8011-719
	1999. 5. 29.	국고증권실장결재	금증8010-467
	2004. 6. 2.	국고증권실장결재	금증8011-326
	2005. 12. 6.	국고증권실장결재	금증8011-80
	2008. 8. 18.	국고증권실장결재	증권팀-1097
	2009. 4. 23.	국고증권실장결재	증권팀-593
	2012. 5. 15.	국고증권실장결재	증권팀-724
	2014. 12. 24.	국고증권실장결재	증권팀-1772
	2019. 9. 10.	국고증권실장결재	증권팀-1090
	2020. 5. 6.	국고증권실장결재	증권팀-603
	2022. 2. 3.	국고증권실장결재	증권팀-156
	2023. 3. 7.	금융업무실장결재	증권팀-41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국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한국은행의 국채(보상채권을 포함한다) 및 관련 거래 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채 및 관련 거래 업무의 취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이하 “금융업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역본부”란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말한다.
3. “통할점”이란 금융업무실 및 지역본부를 말한다.
4. “주등록”이란 등록국채의 소유권의 발생, 소멸 및 변경사항을 등록함을 말한다.
5. “부기등록”이란 주등록 금액 범위에서 질권, 전질 또는 그 밖의 담보

에 관한 등록과 말소사항, 신탁에 관한 등록과 말소사항을 등록함을 말한다.

6. “금리스왑거래”란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한 원화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와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를 교환하는 국채 거래를 말한다.
7. “한은금융망”이란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말한다.

### 제2장 발행

제4조(발행방법) 국채는 경쟁입찰, 인수, 위탁, 매출 및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5조(인감신고) ① 한국은행과 국채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인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할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명증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인인감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매출발행) 국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매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통할점에 신청한다.

제7조(모집발행) ① 국채를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입찰(응모)서<별지 제3호 서식>를 통할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할점은 응모 실적을 국채응모일보<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일 중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국채입찰(응모)서 및 국채응모일보에 따라 국채응모배정명세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응모자별 배정금액을 결정 후 그 배정내역을 해당 통할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수 또는 위탁발행) 국채를 인수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거래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채 인수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제9조(보증금의 납부 및 환급) ① 국채발행 공고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입찰자 또는 응모자는 국채(입찰·응모)보증금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유가증권납입서<별지 제10호 서식>로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

우에는 국채(입찰·응모)보증금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 제출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금은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자기명의로 발행한 한국은행 당좌수표,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장증권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경우 그 증권의 평가금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국채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상장증권으로 납부한 보증금은 국채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채(입찰·응모)보증금환급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채대금의 납부) ① 국채대금은 국채대금납부서<별지 제12호 서식>와 함께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지급수단으로 납부한다. 다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국채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채대금납부서<별지 제12호 서식> 제출을 생략한다.

② 지정된 기일 내에 국채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낙찰 또는 배정은 무효로 한다.

제11조(보증금 및 국채대금의 처리) ① 지역본부는 수납받은 보증금 및 국채대금을 수납 당일 본부에 송금하여야 한다.

② 본부는 국채대금을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정한 해당 국채의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한다.

제12조(국채증권의 교부) ① 국채대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국채증권 또는 국채등록필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한다.

② 통할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소지한 자에게 보상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원부와 서로 대조하여 그가 정당한 수령권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제20조 및 제29조제3항·제4항에 따라 국채증권을 교부하는 경우 증권의 수령자는 국채수령증<별지 제1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경쟁입찰

제13조(입찰발행) ① 국채를 발행, 매입 및 교환하기 위한 경쟁입찰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
2. 입찰서(국채입찰(응모)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국채매입(교환)입찰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본부에 제출하는 입찰(이하 각각 “모사전송입찰” 및 “전자우편입찰”이라 한다)
3. 입찰서를 입찰봉투(국채입찰봉투<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국채매입(교환)입찰봉투<별지 제4-1호 서식>를 말한다)에 넣어 봉하고 도장을 찍어 본부에 제출하는 입찰(이하 “서면입찰”이라 한다)

② 일반인으로부터 국고채입찰 참여신청을 받은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권 일반인우선배정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고채전문딜러가 국고채권 비경쟁인수를 신청하거나 비경쟁인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권비경쟁인수신청(취소)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쟁입찰은 감사실 검사역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다만, 전자입찰, 모사전송입찰 및 전자우편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전자입찰)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자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 참가자는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입찰 내역을 입력한 후 한국은행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한은금융망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서를 본부에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5조(모사전송입찰·전자우편입찰·서면입찰) ① 모사전송입찰 또는 전자우편입찰은 전자입찰 전 또는 입찰 중에 정전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전자입찰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면입찰은 제1항에 따른 입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전자입찰의 취소) ① 전자입찰 참가자가 입찰 내역을 송신하였으나 응찰 종료시각 이전에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응찰내용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 참가자가 입력한 응찰금액 또는 응찰금리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응찰 종료시각 이후에 발견하여 서면으로 응찰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정해진 보증금에 미달한 입찰
3. 전자입찰 실시 중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이 모사전송입찰, 전자우편 입찰 또는 서면입찰로 대체되는 경우 이미 한은금융망에 접수된 전자 입찰
4. 그 밖에 입찰사항 및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입찰

제18조(입찰결과와 통보) 금융업무실장은 입찰이 종료되면 응찰 및 낙찰 내역을 즉시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낙찰결과에 대한 확정통지를 받으면 이를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 제4장 등록

제19조(등록청구) ① 「국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이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등록청구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명자로 국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채등록청구서<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 다만, 보상채권에 대하여는 등록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등록국채에 대한 부기등록은 국채 부기등록(말소)청구서<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

제20조(등록기명증권의 발행 및 대체증권의 교부) 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등록국채에 대한 기명증권(이하 “등록기명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청구는 등록기명증권발행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로 한다. 다만, 부기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록 금액을 제외한 등록 잔액에 한정한다.

②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표의 교부 청구는 대체증권교부청구서<별지 제18호 서식>로 한다.

제21조(등록통지) ①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국채등록필 통지는 국채등록필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로, 부기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통지는 국채 부기등록필통지서<별지 제19호 서식>로 한다. 다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 전문송신으로 같음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명자로 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국채일괄등록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 전문송신으로 같음한다. 제22조(등록변경) ①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채등록변경청구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등록필통지서와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인 개명의 경우 해당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신고서
2.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해당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초본과 인감신고서
3. 자연인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증(대조 후 반환한다),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인등기부초본. 다만, 행정구역의 분리·병합이나 그 밖의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은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한 등록변경의 경우에는 국채양수도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를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 다만, 부기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록 금액을 제외한 등록 잔액에 한정한다.

③ 제20조에 따라 등록기명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등록변경은 국채등록변경청구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거나 국채양수도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등록기명증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

제23조(등록말소) 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등록 말소는 국채등록말소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 다만, 부기등록의 말소는 국채부기등록(말소)청구서<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

②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등록을 말소한다.

③ 제22조제4항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분리 또는 재결합 청구를 접수한 때에 분리 또는 재결합 이전의 등록국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국채등록부) ① 국채등록부는 갑을 2종으로 구분하여 갑종국채등록부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국채를 등록하고 을종국채등록부에는 기명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등록한다.

② 국채등록부 부분의 관리에는 한국은행의 전산정보업무 취급규정상의 전산파일 보존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청구 등) ①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등록국채의 기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채등록부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청구는 국채등록부열람청구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국채등록관련서류발급청구서<별지 제25호 서식>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서류 또는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국채등록부 등본·초본 교부는 국채등록부잔액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국채등록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서 정한 국채등록부잔액증명서, 제21조에서 정한 국채등록(부기등록)필통지서 및 국채일괄등록확인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채등록관련서류발급청구서<별지 제25호 서식>로 청구한다.

## 제5장 상환

제26조(국채의 원리금 지급) ① 국채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채증권과 함께 국채원리금지급청구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국채의 경우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권판결문 정본(정본을 제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으로 한다)과 함께 국채원리금지급청구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명국채의 경우 멸실 또는 분실 신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제권판결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원금을 분할상환할 경우의 상환금액은 해당 국채증권의 최저액면 미달액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④ 부기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은 부기등록 금액을 제외한 등록잔액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자는 이자부분에 대해 부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27조(상환대금의 처리) ① 지역본부는 국채상환대금을 상환 당일 본부에 역이체하여야 한다.

② 본부는 국채상환대금을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서 정한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지급으로 정리한다.

③ 본부는 국고채 발행과 매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국고채전문딜러와는 차액만을 정산하는 국고채 교환거래 자금을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서 정한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 또는 지급으로 정리한다.

## 제6장 증권 보관 및 관리

제28조(증권과목) 증권은 미발행증권, 보관증권, 폐기증권 및 보기증권으로 구분 관리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29조(증권의 출납) ① 증권이 출납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마다 국채명칭, 권종별, 소과목별, 회차·일물별로 증권수입표<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증권교부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당일 취급분을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예비증권 및 발매증권은 번호 순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번호 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국채증권의 소유자가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채증권전환청구서<별지 제30호 서식>로 한다.

④ 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국채증권의 교환 청구는 국채증권교환청구서<별지 제31호 서식>로 한다.

⑤ 보상채권에 대하여는 증권이 분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증권의 무효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교환 또는 등록할 수 없다.

1. 기호, 번호, 인장, 액면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
2. 증권이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것
3. 잘게 나누어진 조각을 이어 붙인 증권으로서 동일한 지편(紙片)이라고 감식하기 곤란한 것
4. 증권이 지질 또는 채색의 변화나 그 밖의 원인으로 진위의 판별이 곤란한 것

② 지역본부에서 무효판정을 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판정한다.

③ 통할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효증권을 소지인 입회하에 무효권의 표시를 한 후 조각자 및 입회자를 지정하여 태우기, 잘게 자르기 또는 녹이기 등의 방법으로 소각한다.

제31조(소실, 위·변조증권의 보고) ① 본부는 통할점에서 보관 또는 수송 도중 소실된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명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부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증권의 묶음) ① 증권은 국제명칭별, 권종별, 소과목별, 회차·일물별로 100장씩 묶어서 작은묶음으로 하고 작은묶음 10개를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리한 후 노끈으로 가로 세로의 중앙을 묶는다. 다만, 폐기증권은 국제명칭별, 권종별, 소과목별로 정리하여 묶는다.

② 작은묶음은 각 장의 전후상하를 고르고 전면은 향하여 밀변 및 오른쪽 변을 가지런히 한 후 소형띠지로 중앙을 세로로 묶는다.

③ 띠지의 윗면에는 취급점명 및 일자를 표시하고 아랫면에는 담당자인을 날인한다.

④ 작은묶음 1개를 2명이 정사하였을 경우에는 1차 정사자는 오른쪽 후면, 2차 정사자는 왼쪽 후면을 향하여 각각 날인하되 1차 정사자는 위조, 변조 또는 손상으로 인한 무효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차 정사자는 장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3조(증권의 보관) ① 증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증권은 봉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보기증권은 비치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봉인은 소관부서장이 실시하고 소관부서장이 지정한 2인 이상이 함께 날인하여야 하며 개봉은 소관부서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지정한 자가 실시한다.

제34조(과부족 보고 및 처리) ① 증권이 남거나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통할점은 즉시 그 사유를 밝히고 그 경위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족한 증권은 관련 담당자가 해당 증권 또는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하되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수입하고 본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남는 증권은 보관증권 과목으로 정리한다.

제35조(증권의 폐기 등) ① 상환 등으로 회수하거나 용도가 없어진 국제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폐기증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통할점명이 있는 직경 2.5cm의 폐기증권임을 표시하는 원형도장을 증권면의 발행자인 위에 날인

2. 증권 앞면의 좌우양단 중앙에 “PAID” 또는 “무효” 구멍뚫기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된 증권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권판결문이 제출된 증권은 해당 증권의 만기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제증권은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통할점장이 태우기, 잘게 자르기 또는 녹이기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소각할 수 있다.

④ 해당 증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 종료 등으로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보기증권은 통할점장 책임하에 태우기, 잘게 자르기 또는 녹이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발권규정 시행세칙」 및 「발권규정 시행절차」를 준용한다.

## 제7장 금리스왑거래

제37조(인감신고) ① 한국은행과 금리스왑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인인감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경쟁입찰) ① 금리스왑거래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금융업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서 제출방식의 서면입찰

2.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자입찰

② 입찰은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 및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감사실 검사역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서면입찰) 금리스왑거래의 서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금리스왑거래입찰서<별지 제3-2호 서식>를 금리스왑거래입찰봉투<별지 제4-2호 서식>에 넣어 봉하고 도장을 찍어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전자입찰) ① 금리스왑거래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자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 참가자는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입찰내역을 입력한 후 한국은행에 송신하여야 한다. 전산장애 또는 한은금융망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리스왑거래입찰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본부에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금융업무실장은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전자입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입찰시간을 조정하거나 서면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준용규정) 전자입찰의 취소, 입찰의 무효, 입찰결과의 통보에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8장 그 밖의 사항

제42조(과오납금의 처리) 국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대금을 잘못 받았거나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환입하고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국채증권 또는 이표의 분실이나 멸실의 신고는 국채증권멸실(분실)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로 한다.

제44조(수수료 징수) 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한다)이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국공채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수수료 징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참가기관이 국공채거래를 한은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납부의무자로부터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부기등록 신청 : 부기등록 설정자
2. 국공채등록변경(양수도) 신청 : 양도자 및 양수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참가기관과 비참가기관 간 국공채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장부의 비치) 국채사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증권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 관련 장부의 기장처리는 전산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채발행자금수급장
2. 국채발행액원장
3. 국채주등록부
4. 국채부기등록부
5. 등록국채공유자명부
6. 등록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장

7. 국채증권신탁표시부
8. 국채증권출납장
9. 국채증권사고신고접수부
10. 국채발행관리대장
11. 원천징수대장
12. 국채증권소각명세장
13. 보기증권소개별장
14.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접수처리부

제46조(전표) ① 국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표를 사용한다. 다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거래시 전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전산처리 결과 출력되는 자료를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1. 국채(입찰·응모)보증금납부서
2. 유가증권납입서
3. 국채대금납부서
4. 국채(입찰·응모)보증금환급청구서
5. 국채매출신청서
6. 국채등록청구서
7. 국채부기등록(말소)청구서
8. 등록기명증권발행청구서
9. 대체증권교부청구서
10. 등록국채양수도청구서
11. 등록기명증권양수도청구서
12. 국채등록말소청구서
13. 국채원리금지급청구서
14. 증권수입표
15. 증권교부표
16. 국채증권전환청구서
17. 국채증권교환청구서

② 제1항에서 정한 전표는 매일 처리분을 합계표 및 총계표와 함께 묶어 보관한다.

제47조(상위직급자의 거래 승인)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상위직급자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채 입찰정보 관리 업무
2. 옵션한도 통지 업무

- 3. 입찰시 내정금리 입력 업무
- 4. 조기상환(교환) 관련 업무
- 5. 물가연동계수 및 변동금리 관리 업무
- 6. STRIPS 관련 업무
- 7. 국채관련 업무의 취소 거래
- 8. 그 밖에 상위직급자의 승인이 필요한 업무

부칙<1987. 12. 7>

-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88. 1. 21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절차 시행과 동시에 아래의 규정은 폐지한다.
  - 1. 「국채사무처리요강」
  - 2. 「재정증권사무처리절차」
  - 3. 「외국환평형기금채권사무취급절차」
  - 4. 「국민투자채권사무취급절차」
  - 5. 「견양증권관리절차」
- ③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이전의 국채사무는 이 절차에 의하여 취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9. 3. 15>

이 절차는 1989. 3. 23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12>

이 절차는 1990. 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9. 5>

이 절차는 199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17>

이 절차는 1992.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2. 22>

이 절차는 1994. 3. 23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4. 25>

이 절차는 1994. 4. 25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8. 22>

이 절차는 1996. 9. 2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9. 25>

이 절차는 1996. 10. 1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30>

이 절차는 1996. 10. 30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29>

이 절차는 1997.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19>

이 절차는 1998. 1. 12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18>

이 절차는 199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 29>

-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99. 6. 10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절차 시행과 동시에 아래의 규정은 폐지한다.
  - 1. 「공공용지보상채권 사무처리지침」
  - 2.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국공채업무관련 수수료 징수절차」
- ③ (제권관결문의 취급) 이 절차 시행일 이전에 지급 완료된 제권관결문에 대해서는 이 절차에서 정한 폐기증권으로 본다.

부칙<2004. 6. 2>

이 절차는 2004. 6. 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6>

이 절차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8>

이 절차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3>

이 절차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절차는 2012. 5. 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4>

이 절차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10>

이 절차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6>

이 절차는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3>

이 절차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7>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전에 종전 절차에 따라 처리된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때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 약인 또는 금융업무실장 인장이 찍힌 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

**증 권 과 목**

대 과 목	소 과 목	내 용
미발행증권	미완성증권	0 문자, 인장, 회차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입하지 아니한 증권
	예 비 증 권	0 예비용으로 등록말소, 권중교환 및 손상증권 교환에 충당하는 증권
	발 매 증 권	0 발매용 미발행증권
보 관 증 권	보 관 증 권	0 타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보관증권
폐 기 증 권	지급완료증권	0 원리금 지급완료로 회수한 증권
	매입소각증권	0 매입소각으로 수입한 증권
	등록변환증권	0 등록으로 회수한 증권
	제권판결증권	0 지급완료된 제권판결문
보 기 증 권	기 타 증 권	0 교환 또는 전환으로 회수한 증권, 기타 불필요하게 된 증권
	보 기 증 권	0 국채증권의 견품

< 결 >

## 별 지 서 식 목 록

별지 제 1호 서식	인감신고서
별지 제 2호 서식	대리인인감신고서
별지 제 3호 서식	국채입찰(응모)서
별지 제 3-1호 서식	국채매입(교환)입찰서
별지 제 3-2호 서식	금리스왑거래입찰서
별지 제 3-3호 서식	국고채권일반인우선배정신청서
별지 제 3-4호 서식	국고채권비경쟁인수신청(취소)서
별지 제 4호 서식	국채입찰봉투
별지 제 4-1호 서식	국채매입(교환)입찰봉투
별지 제 4-2호 서식	금리스왑거래입찰봉투
별지 제 5호 서식	전자입찰자등록신청서
별지 제 6호 서식	국채매출신청서
별지 제 7호 서식	국채응모일보
별지 제 8호 서식	국채응모배정명세표
별지 제 9호 서식	국채(입찰·응모)보증금납부서
별지 제10호 서식	유가증권납입서
별지 제11호 서식	국채(입찰·응모)보증금환급청구서
별지 제12호 서식	국채대금납부서
별지 제13호 서식	국채등록필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국채수명증
별지 제15호 서식	국채등록청구서
별지 제16호 서식	국채부기등록(말소)청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등록기명증권발행청구서
별지 제18호 서식	대체증권교부청구서
별지 제19호 서식	국채부기등록필통지서
별지 제20호 서식	국채일괄등록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국채등록변경청구서
별지 제22호 서식	국채양수도청구서
별지 제23호 서식	국채등록말소청구서
별지 제24호 서식	국채등록부열람청구서
별지 제25호 서식	국채등록관련서류발급청구서
별지 제26호 서식	국채등록부안액증명서
별지 제27호 서식	국채원리금지급청구서
별지 제28호 서식	증권수입표
별지 제29호 서식	증권교부표
별지 제30호 서식	국채증권전환청구서
별지 제31호 서식	국채증권교환청구서
별지 제32호 서식	국채증권멸실(분실)신고서